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 호반써밋Ⅲ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701331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5.12.12.)로부터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없음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5.11.24.(월)	2026.11.19.(목)	2026.11.24.(화)	2026.11.27.(금)	2026.12.07.(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9.(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307**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24.(월)**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585**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026.11.24.(화)**	**2026.11.27.(금)**	**2026.12.07.(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호반써밋 아라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4로 101)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인천광역시 검단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5.12.12.)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까지)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인천 검단신도시 AB13블록 호반써밋 아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4로 101)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총 905세대 중 잔여 1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12월 예정**

■ **공급대상**

(단위: m^2,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307	01	097.9110P	97P	1	2104	2904
	합 계			**1**	-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인터넷 청약신청 기준)	097.9655P
주택형(실제 전용면적 기준)	097.9110P
약식표기(타입)	97P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2022.02.28.) 승인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의해 주거전용면적 및 주택형 표기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 신청시 변경 전 주택형으로 청약신청을 해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동, 호수	층	해당 세대수	공급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입주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97P	1	2104-2904	29	1	273,521,960	335,707,309	33,570,731	642,800,000	64,280,000	578,520,000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 VAT포함)

약식표기 (타입)	동, 호수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97P	2104-2904	4,560,000	456,000	4,104,000	발코니 확장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 VAT포함)

약식표기 (타입)	동, 호수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97P	2104-2904	12,980,000	1,298,000	11,682,000	[시스템에어컨-일반형 3안]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주방 장식장] 장식장(키큰장형) [복합 환풍기] 부부욕실 [전기 쿡탑] 3구 인덕션 (LG / 블랙) [전기 오븐] 일반형(LG)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자재의 주문 · 제작 및 공사가 완료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의 세부 공사내역, 추가선택품목별 세부 공급금액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 납부계좌 안내**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하나은행	**145-910027-485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 분양 대금(계약금, 잔금)은 지정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를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5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5010101홍길동" 으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원센터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27.(금) ~ 2026.12.06.(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1.27.(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입주지원센터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 계약은 불가 ※ 전자 인감증명서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상세'로 발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상세'로 발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분), 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접수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출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서류접수 및 계약채결 기간	서류접수 및 계약채결 장소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채결	**2026.12.07.(월)** (10:00 ~ 16:00)	호반써밋 아라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4로 101)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 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 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서류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계약금은 입주지원센터에서 현금이나 수표 수납 불가함으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요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 거주 사실 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 서명
		○	입주 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해당자	▪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소명자료)	해당자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		전자 정부수입인지	-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취급금융기관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및 출력 ▪수입인지 구매금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 대금 + 추가 선택 품목 대금)에 해당하는 인지세 금액의 절반 ※ 계약서 기재 금액 기준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으로 75,000원** ※ 사업주체 부담의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를 별도로 발행하여 계약서에 첨부 예정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본인	▪ 입주지원센터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배우자	▪ 입주지원센터에 비치 ※ 거래가격 6억원 이상 계약 시 신고 의무
※ 본인 이외에는 모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포함)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위임용)	계약자	▪ 인감증명서 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 대리 계약은 불가
			인감도장	계약자	▪ 계약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 거주 사실 증명서 1부)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위임장	대리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계약체결 장소 비치)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본 주택은 2026년 12월 입주예정 단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중도금 납부 기한이 경과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계약체결하는 입주자는 중도금이 없고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청약 전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현장방문 등으로 주변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인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자재의 주문 · 제작 및 공사가 완료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 시공된 확장형 발코니 및 시스템 에어컨, 추가선택품목 등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등 일체의 추가공사를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5.11.24.)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상 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시행사)	티에스리빙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4층 (우면동, 호반 파크 2관)	200111-0336903
시공사	㈜호반산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75, 5층 (동천동)	200111-0308994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d3-hoban.co.kr/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 당사 입주지원센터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